

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 - 12호

『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』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5년 3월 23일

인천광역시의회 의장

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인천광역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생활임금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)
-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생활임금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부터 안 제8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.

4. 2(목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참조 :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-6232, 팩스 440-876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·반여부와 그 사유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·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
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 : ○ 성 명 : 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붙임자료

가. 조례안 1부

나.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

다.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.

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생활임금”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·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.
2. “소속 근로자”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로 한다.

제4조(생활임금의 결정 등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생활임금을 산정(算定)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, 유사 근로자의 임금, 노동의 정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) 시장은 생활임금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, 예산담당 부서장,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생활임금 관련 외부 전문가로 하되,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.
제7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2.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

관계법령	☐ 지방자치법 -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- 제22조(조례) - 제105조(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) ☐ 근로기준법 - 제4조(근로조건에의 결정) - 제12조(적용범위) ☐ 최저임금법 - 제6조(최저임금의 효력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련 법령 발췌사항

☐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05조(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☐ 근로기준법

제4조(근로조건의 결정)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12조(적용 범위)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, 특별시·광역시·도, 시·군·구, 읍·면·동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.

☐ 최저임금법

제6조(최저임금의 효력)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인천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에 대해 재정수반 요인이 있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 - ※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생활임금의 액수는 지역별 생활 및 물가수준, 유사 근로자의 임금수준,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그 액수를 추계하기 어려움.

4.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이 용 범 의원